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26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7. 1. 11
- 다. 상 정 일 자 : 2007. 1. 16 (제14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도시위원회 상정, 위원선임 의결)

2. 제안사유

- 제4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7. 1. 3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7인의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그간의 추진경과

- 2007. 1. 3부로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6. 11. 30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 공문(사하 청소행정과-8388호)을 접수한바 있으며
- 지난 2006. 12. 5 사하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위원선정을 위한 주민대표 위원 후보자 및 참고자료 요청 공문을 의회사무국-1905호로 발송한데 대하여
- 지난 2006. 12. 13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정 의뢰 공문(사하 청소행정과-8928호)이 2차로 접수되고 이어서 같은 날 의회사무국-1957호로 사하구청장에게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후보자 추천에 따른 협조 공문을 재발송 하였으며

- 지난 2006. 12. 18 예산편성 관련 간담회시 의장을 비롯한 옥영복·김연수·노승중의원 등 의회 간부진과 부구청장 등 예산관련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대소각장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조토록 당부하셨고 이어서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행정과장에게 2006. 12. 22까지 후보자 추천을 결정하라고 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실에서 옥영복·김정량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대소각장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의장님이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셨음.
- 지난 2006. 12. 26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추천결과 통보 공문(사하 청소행정과-9803호)을 접수하였으며
- 지난 2007. 1. 2 의원 간담회시 제5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제144회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도시위원회를 속개하여 2007. 1. 16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
- 지난 2007. 1. 3 제144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일정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직원(박장원)에게 유선통보를 하고 주민대표 후보자의 적합 여부 판단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조속 송부토록 요청하였음

□ 법률 검토보고

-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 소각장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번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할 지원협의체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의회 의원 2명이 되겠습니다.
 - 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의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 지역여건과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성이 강하고 대표성이 있는 자 등 사회적 역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협의체 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등 입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는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임원의 선출, 회의개최 시기, 안전제출 및 처리결과 등 적법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7인의 후보자 전원을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
- 선임된 주민대표위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	██████-██████	████████████████████ ████████████████████	
2	██████	██████-██████	████████████████████ ████████████████████	
3	██████	██████-██████	████████████████████ ████████████████████	

4	[REDACTED]	[REDACTED]	[REDACTED]	
5	[REDACTED]	[REDACTED]	[REDACTED]	
6	[REDACTED]	[REDACTED]	[REDACTED]	
7	[REDACTED]	[REDACTED]	[REDACTED]	